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파란색 글씨=수정된 부분)			
공통수정	에너지관리공단	한국에너지공단		
38페이지 예제문제 08	6. 고등·대학교			
67페이지 (5) 건축물 대장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재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1. 대상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모두 해당되는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① 중앙행정기관 등 영 제9조②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                     ② 신축·재축 또는 <b>별동</b>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                     ③ 연면적 3,000㎡ 이상일 것                      ④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able>		1. 대상	다음 각 호의 기준이 모두 해당되는 건축물 ① 중앙행정기관 등 영 제9조②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② 신축·재축 또는 <b>별동</b>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③ 연면적 3,000㎡ 이상일 것 ④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
1. 대상	다음 각 호의 기준이 모두 해당되는 건축물 ① 중앙행정기관 등 영 제9조②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② 신축·재축 또는 <b>별동</b>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③ 연면적 3,000㎡ 이상일 것 ④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			
76페이지 예제문제 15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<b>예제문제 15</b></p> <p>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</p> <p>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                    ②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<b>사용량</b>                      ③ 월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                     ④ 연간 온실 가스 배출량</p> <p>.....</p> <p><b>해설</b>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사용량으로 기재한다. <span style="float: right;"><b>답 : ③</b></span></p> </div>			
102페이지 예제문제 03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<b>예제문제 03</b></p> <p>「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」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</p> <p>① <b>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, 기획, 설계, 시공 등에 관한 사업</b>                      ②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                     ③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사업                      ④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사업</p> <p>.....</p> <p><b>해설</b>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 사업에 해당된다. <span style="float: right;"><b>답 : ③</b></span></p> </div>			
112페이지 <b>요점</b> 자격심의위원회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3. 운영 등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①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<b>위원장</b>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④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⑤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⑥ <b>제①항부터 제⑤항까지</b>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able>		3. 운영 등	①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. ②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<b>위원장</b>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④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⑤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⑥ <b>제①항부터 제⑤항까지</b>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3. 운영 등	①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. ②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<b>위원장</b>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④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⑤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⑥ <b>제①항부터 제⑤항까지</b>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			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파랑색 글씨-수정된 부분)																		
133페이지 6) 한옥	한옥이란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.  참고 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(제2조 2호) 2. “한옥”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·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.																		
142페이지 ② 대수선의 범위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부 위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내 용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9. 다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를 증설·해체하거나 벽면적 30m<sup>2</sup> 이상 수선·변경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① 6층 이상 건축물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② 높이 22m 이상 건축물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③ 상업지역(근린상업지역제외) 안의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: 2,000m<sup>2</sup> 이상 다중이용업 또는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주계단·피난계단·특별피난계단을 말함</p>	부 위	내 용	비 고		9. 다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를 증설·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<sup>2</sup> 이상 수선·변경			① 6층 이상 건축물			② 높이 22m 이상 건축물			③ 상업지역(근린상업지역제외) 안의			: 2,000m <sup>2</sup> 이상 다중이용업 또는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	
부 위	내 용	비 고																	
	9. 다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를 증설·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<sup>2</sup> 이상 수선·변경																		
	① 6층 이상 건축물																		
	② 높이 22m 이상 건축물																		
	③ 상업지역(근린상업지역제외) 안의																		
	: 2,000m <sup>2</sup> 이상 다중이용업 또는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																		
148페이지 예제문제 16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"> <p><b>예제문제 16</b></p> <p>건축법 용어정의 중 적합한 것은?</p> <p>① 대지란 원칙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.</p> <p>② 주요구조부는 내력벽, 기둥, 바닥, 보, 옥외계단 및 기초를 말한다.</p> <p>③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④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hr/> <p><b>해설</b> ② 옥외계단, 기초는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리모델링이란 증축 및 대수선에 해당되는 행위이다.                      ④ 초고층 건축물이란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높이 200m 이상이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답 : ①</p> </div>																		
149페이지 예제문제 17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"> <p><b>예제문제 17</b></p> <p>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?</p> <p>① 대지라 함은 건축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.</p> <p>②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·집무·오락·작업·집회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.</p> <p>③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.</p> <p>④ 내수재료란 벽돌·자연석·인조석·콘크리트·아스팔트·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.</p> <hr/> <p><b>해설</b>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구획 단위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답 : ①</p> </div>																		
159페이지 (3) 제1종 근린생활시설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body> <tr> <td style="width: 80%;">아. 변전소, 도시가스배관시설 양수장, 정수장, 대피소, 공중화장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자. 지역아동센터(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차. 바닥면적합계 1,000m<sup>2</sup> 미만일 것, 통신용시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아. 변전소, 도시가스배관시설 양수장, 정수장, 대피소, 공중화장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	-	자. 지역아동센터(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)	-	차. 바닥면적합계 1,000m <sup>2</sup> 미만일 것, 통신용시설	-												
아. 변전소, 도시가스배관시설 양수장, 정수장, 대피소, 공중화장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	-																		
자. 지역아동센터(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)	-																		
차. 바닥면적합계 1,000m <sup>2</sup> 미만일 것, 통신용시설	-																		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파랑색 글씨-수정된 부분)															
166페이지 (29) 추가	(29) 야영장시설 <hr/>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, 화장실, 샤워실, 대피소,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미만인 것															
224페이지 2)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의 실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486 398 991 450">대상 건축물</th> <th data-bbox="991 398 1453 450">규모 등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86 450 991 501">1. 다중이용 건축물</td> <td data-bbox="991 450 1453 501">-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86 501 991 553">2.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</td> <td data-bbox="991 501 1453 553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86 553 991 674">3. 집합건축물(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)</td> <td data-bbox="991 553 1453 674">연면적의 합계 3,000㎡ 이상인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■예외: 「주택법」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86 674 991 772">4.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)</td> <td data-bbox="991 674 1453 772">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 건축물	규모 등	1. 다중이용 건축물	-	2.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		3. 집합건축물(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)	연면적의 합계 3,000㎡ 이상인 건축물 ■예외: 「주택법」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	4.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)	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					
대상 건축물	규모 등															
1. 다중이용 건축물	-															
2.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																
3. 집합건축물(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)	연면적의 합계 3,000㎡ 이상인 건축물 ■예외: 「주택법」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															
4.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)	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															
230페이지 예제문제 25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<b>예제문제 25</b></p> <p>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?</p> <p>① 모든 건축물은 철거, 멸실을 할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축사가 철거 후 7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5일전까지 건축물을 철거·멸실신고를 할 수 있다.</p> <hr/> <p><b>해설</b> 건축물의 철거·멸실신고</p> <table border="1"> <tbody> <tr> <td>신고대상자</td> <td colspan="2">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</td> </tr> <tr> <td>신고대상</td> <td colspan="2">허가·신고대상 건축물(멸실의 경우: 허가대상건축물)</td> </tr> <tr> <td>건축물</td> <td>철거된 경우</td> <td>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</td> </tr> <tr> <td>신고기간</td> <td>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</td> <td>멸실 후 30일 이내</td> </tr> <tr> <td>신고기관</td> <td colspan="2"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답: ③</p> </div>	신고대상자	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		신고대상	허가·신고대상 건축물(멸실의 경우: 허가대상건축물)		건축물	철거된 경우	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	신고기간	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	멸실 후 30일 이내	신고기관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	
신고대상자	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															
신고대상	허가·신고대상 건축물(멸실의 경우: 허가대상건축물)															
건축물	철거된 경우	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														
신고기간	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	멸실 후 30일 이내														
신고기관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															
290페이지 <b>요점</b>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구조제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486 1373 869 1413">대상 건축물</th> <th data-bbox="869 1373 1171 1413">구획되는 부분</th> <th data-bbox="1171 1373 1465 1413">벽의 구조 및 설치방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86 1413 869 1487">1.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 2. 다가구 주택</td> <td data-bbox="869 1413 1171 1487">각 세대간 또는 가구간의 경계벽(발코니 부분은 제외)</td> <td data-bbox="1171 1413 1465 1753" rowspan="3">차음구조 및 내화구조로 하고, 이를 지붕 및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.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86 1487 869 1637">3. 기숙사의 침실 4. 의료시설의 병실 5. 학교의 교실 6. 숙박시설의 객실</td> <td data-bbox="869 1487 1171 1637">각 거실간의 칸막이벽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86 1637 869 1711">7. 다중생활시설(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)</td> <td data-bbox="869 1637 1171 1711">호실간 칸막이벽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86 1711 869 1753">8. 노인 복지주택</td> <td data-bbox="869 1711 1171 1753">세대간 경계벽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 건축물	구획되는 부분	벽의 구조 및 설치방법	1.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 2. 다가구 주택	각 세대간 또는 가구간의 경계벽(발코니 부분은 제외)	차음구조 및 내화구조로 하고, 이를 지붕 및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.	3. 기숙사의 침실 4. 의료시설의 병실 5. 학교의 교실 6. 숙박시설의 객실	각 거실간의 칸막이벽	7. 다중생활시설(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)	호실간 칸막이벽	8. 노인 복지주택	세대간 경계벽			
대상 건축물	구획되는 부분	벽의 구조 및 설치방법														
1.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 2. 다가구 주택	각 세대간 또는 가구간의 경계벽(발코니 부분은 제외)	차음구조 및 내화구조로 하고, 이를 지붕 및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.														
3. 기숙사의 침실 4. 의료시설의 병실 5. 학교의 교실 6. 숙박시설의 객실	각 거실간의 칸막이벽															
7. 다중생활시설(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)	호실간 칸막이벽															
8. 노인 복지주택	세대간 경계벽															
300페이지 <b>요점</b> 건축설비 기준 등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491 1783 694 1823">구분</th> <th data-bbox="694 1783 1310 1823">세부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91 1823 694 1865">1. 건축법</td> <td data-bbox="694 1823 1310 1865">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data-bbox="694 1865 1310 1908"><del>제63조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</del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data-bbox="694 1908 1310 1951">제64조 승강기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data-bbox="694 1951 1310 1993">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data-bbox="694 1993 1310 2036">제68조 기술적 기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세부사항	1. 건축법	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		<del>제63조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</del>		제64조 승강기		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		제68조 기술적 기준			
구분	세부사항															
1. 건축법	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															
	<del>제63조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</del>															
	제64조 승강기															
	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															
	제68조 기술적 기준															

해당 페이지 정 오 표 (파랑색 글씨-수정된 부분)

301페이지

2)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의 실시

예제문제 01

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?

- ① 배연설비의 설비기준
- ② 오수정화시설의 구조기준
- ③ 급수설비를 통한 급수의 수질기준
- ④ 지하층에 설치하는 배수펌프의 성능기준

해설 「건축법」의 건축설비규제 일람표

구분	규제조항
1. 승용승강기	설치대상(법 제64조 ①항)
	설치기준(건축물의 설비 규칙 제5조)
2. 비상승용승강기	설치대상(법 제64조 ②항)
	설치기준(영 제90조 ①, ②항)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(설비규칙 제10조)
3. 피난승용승강기	설치대상(피난규칙 제29조)
	설치기준(피난규칙 제30조①항)
4. 온돌 및 난방설비	설치기준(법 제63조, 설비규칙 제4조)
5. 난방설비	개별난방설비기준(설비규칙 제13조)
6. 배연설비	배연설비대상 및 설비기준
7. 환기설비	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(설비규칙 제11조)
8. 배관설비	급수, 배수, 음용수용 배관 설비기준
9. 피뢰설비	피뢰설비 대상 및 설비기준
10. 굴뚝	굴뚝의 설치기준(피난규칙 제20조)
11. 차수설비	차수설비 대상 등(설비규칙 제17조의2)
12. 냉방설비	배기구 설치 제한(설비규칙 제23조 ③항)
13. 우편수취함	우편법

답 : ①

314페이지

예제문제 08

예제문제 08

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난방설비 기준 중 적합한 것은?

- ① 보일러실 아랫부분에 지름 10cm 이상의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바깥공기를 집하도록 설치할 것
- ② 보일러의 연도는 방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
- ③ 보일러실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1m<sup>2</sup>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
- ④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

해설 1. 직경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(보일러실 아랫부분)와 배기구(보일러실 윗부분)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.

- 2. 내화구조의 공동연도 설치
- 3. 0.5m<sup>2</sup> 이상의 환기창 설치

답 : ④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파랑색 글씨-수정된 부분)																		
314페이지 4 온돌 구조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법</th> <th>시행령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63조 【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】  <del>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</del> </td> <td>제87조 【건축설비 설치의 원칙】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·배수·냉방·난방·환기·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,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&lt;개정 2013.3.23&gt;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법	시행령	제63조 【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】 <del>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</del>	제87조 【건축설비 설치의 원칙】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·배수·냉방·난방·환기·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,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														
법	시행령																		
제63조 【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】 <del>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</del>	제87조 【건축설비 설치의 원칙】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·배수·냉방·난방·환기·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,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																		
326페이지 (1) 환기설비대상	<table border="1"> <tbody> <tr> <td>1.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<del>거숙사 제외</del>)</td> <td rowspan="2">· 자연환기 · 기계환기</td> </tr> <tr> <td>2.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1.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 <del>거숙사 제외</del> )	· 자연환기 · 기계환기	2.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														
1.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 <del>거숙사 제외</del> )	· 자연환기 · 기계환기																		
2.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																			
329페이지 요점 배연설비	(1) 거실에 설치하는 배연설비 구조기준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모</th> <th>건축물의 용도</th> <th>구 분</th> <th>구 조 기 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① 6층 이상의 건축물</td> <td rowspan="3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문화 및 집회시설</li> <li>· 의료시설</li> <li>· 운동시설</li> <li>· 숙박시설</li> <li>· 관광휴게시설</li> <li>· 종교시설</li> <li>· 운수시설</li> <li>· 판매시설</li> <li>· 연구소</li> <li>· 아동관련시설</li> <li>· 노인복지시설</li> <li>· 유스호스텔</li> <li>· 업무시설</li> <li>· 위탁시설</li> <li>· 장례식장</li> <li>· 다중생활시설(고시원)</li> </ul> </td> <td>배연창의 위치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-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.9m 이내일 것                      다만, 반자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.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배연창의 유효면적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㎡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1/100 이상</li> <li>■ 예외 : 방화구획이 된 경우 거실바닥면적의 1/20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배연구의 구조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기감지기, 열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할 것</li> <li>· 예비전원에 의해 열 수 있도록 할 것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②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요양병원</li> <li>· 정신병원</li> <li>· 노인요양시설</li> <li>· 장애인거주시설</li> <li>· 장애인 의료재활시설</li> </ul> </td> <td>기계식 배연설비</td> <td>·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른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 모	건축물의 용도	구 분	구 조 기 준	① 6층 이상의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문화 및 집회시설</li> <li>· 의료시설</li> <li>· 운동시설</li> <li>· 숙박시설</li> <li>· 관광휴게시설</li> <li>· 종교시설</li> <li>· 운수시설</li> <li>· 판매시설</li> <li>· 연구소</li> <li>· 아동관련시설</li> <li>· 노인복지시설</li> <li>· 유스호스텔</li> <li>· 업무시설</li> <li>· 위탁시설</li> <li>· 장례식장</li> <li>· 다중생활시설(고시원)</li> </ul>	배연창의 위치	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-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.9m 이내일 것 다만, 반자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.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	배연창의 유효면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㎡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1/100 이상</li> <li>■ 예외 : 방화구획이 된 경우 거실바닥면적의 1/20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</li> </ul>	배연구의 구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기감지기, 열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할 것</li> <li>· 예비전원에 의해 열 수 있도록 할 것</li> </ul>	②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요양병원</li> <li>· 정신병원</li> <li>· 노인요양시설</li> <li>· 장애인거주시설</li> <li>· 장애인 의료재활시설</li> </ul>	기계식 배연설비	·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른다.
구 모	건축물의 용도	구 분	구 조 기 준																
① 6층 이상의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문화 및 집회시설</li> <li>· 의료시설</li> <li>· 운동시설</li> <li>· 숙박시설</li> <li>· 관광휴게시설</li> <li>· 종교시설</li> <li>· 운수시설</li> <li>· 판매시설</li> <li>· 연구소</li> <li>· 아동관련시설</li> <li>· 노인복지시설</li> <li>· 유스호스텔</li> <li>· 업무시설</li> <li>· 위탁시설</li> <li>· 장례식장</li> <li>· 다중생활시설(고시원)</li> </ul>	배연창의 위치	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-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.9m 이내일 것 다만, 반자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.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																
		배연창의 유효면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㎡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1/100 이상</li> <li>■ 예외 : 방화구획이 된 경우 거실바닥면적의 1/20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</li> </ul>																
		배연구의 구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기감지기, 열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할 것</li> <li>· 예비전원에 의해 열 수 있도록 할 것</li> </ul>																
②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요양병원</li> <li>· 정신병원</li> <li>· 노인요양시설</li> <li>· 장애인거주시설</li> <li>· 장애인 의료재활시설</li> </ul>	기계식 배연설비	·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른다.																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파랑색 글씨-수정된 부분)									
460페이지 왼쪽 네모박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효율관리기자재 표시                (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기냉장고</li> <li>2. 김치냉장고</li> <li>3. 전기냉방기</li> <li>4. <b>전기세탁기</b></li> <li>5. 전기드럼세탁기</li> <li>6. 전기냉온수기</li> <li>7. 전기밥솥</li> <li>8. 전기진공청소기</li> <li>9. 선풍기</li> <li>10. 공기청정기</li> <li>11. 백열전구</li> <li>12. 형광램프</li> </ol> </li> </ul>									
480페이지 왼쪽 네모박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준미달제품 사후관리(예시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컴퓨터                    (우수제품과 경고표지대상 제품임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기전력 우수제품 표시제거</li> <li>• 대기전력 경고표지 표시 <b>부착</b></li> </ul> </li> </ol> </li> </ul>									
480페이지 <b>요점</b> 사후관리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40%;">시정명령사항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</td> <td>제거</td> <td>제거</td> </tr> <tr> <td>2.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</td> <td>-</td> <td>부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정명령사항	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	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	1.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	제거	제거	2.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	-	부착
시정명령사항	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	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								
1.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	제거	제거								
2.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	-	부착								
529페이지 <b>요점</b> 시공업 등록	<p>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·시공·세관(관 속의 녹, 물 때 등을 벗겨내는 일)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·도지사에게 <b>건설산업기본법</b>에 따라 시공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.</p>									
663페이지 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효율관리 기자재</th> <th style="width: 80%;">기재항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9. 선풍기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풍량효율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측정소비전력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표준풍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최대풍속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1시간 소비전력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1시간 사용시 CO<sub>2</sub> 배출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연간소비전력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연간에너지비용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<del>• 소비효율등급</del>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효율관리 기자재	기재항목	9. 선풍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풍량효율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측정소비전력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표준풍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최대풍속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1시간 소비전력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1시간 사용시 CO<sub>2</sub> 배출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연간소비전력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연간에너지비용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<del>• 소비효율등급</del></li> </ul>					
효율관리 기자재	기재항목									
9. 선풍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풍량효율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측정소비전력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표준풍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최대풍속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1시간 소비전력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1시간 사용시 CO<sub>2</sub> 배출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연간소비전력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연간에너지비용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<del>• 소비효율등급</del></li> </ul>									
657페이지	<p><del>⑨ 고효율 조명기구 :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형광램프 및 안정기내장형램프와 표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형광램프용안정기를 말한다.</del></p>									
667페이지 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효율관리 기자재</th> <th style="width: 80%;">표시항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20. 변압기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<b>효율(50% 부하율 기준)</b>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1차 전압 / 2차 전압 · 상수 · 용량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22. 텔레비전 수상기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1√m<sup>2</sup> 당 소비전력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<del>• 소비전력</del>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1시간 사용시 CO<sub>2</sub> 배출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연간에너지비용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동작모드 소비전력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소비효율등급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효율관리 기자재	표시항목	20. 변압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<b>효율(50% 부하율 기준)</b>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1차 전압 / 2차 전압 · 상수 · 용량</li> </ul>	22. 텔레비전 수상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1√m<sup>2</sup> 당 소비전력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<del>• 소비전력</del>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1시간 사용시 CO<sub>2</sub> 배출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연간에너지비용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동작모드 소비전력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소비효율등급</li> </ul>			
효율관리 기자재	표시항목									
20. 변압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<b>효율(50% 부하율 기준)</b>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1차 전압 / 2차 전압 · 상수 · 용량</li> </ul>									
22. 텔레비전 수상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1√m<sup>2</sup> 당 소비전력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<del>• 소비전력</del>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1시간 사용시 CO<sub>2</sub> 배출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연간에너지비용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동작모드 소비전력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소비효율등급</li> </ul>									

